

無鉛휘발유 공급계획

南宮堅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과장〉

I. 머리말

석유협회보 5월호에 無鉛휘발유 공급에 대하여 자세히 발표된 마당에 또 다시 無鉛휘발유 공급에 대하여 기술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에서 써달라는 성화같은 독촉을 받고 무연휘발유에 대하여 중언 부언하게 되었음을 이 글을 읽는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II. 無鉛휘발유 공급의 필요성

환경보존법에 의한 옥시단트 환경기준은 시간당 0.1ppm인데 반하여 서울지역의 옥사단트농도는 이를 상회하고 있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옥시단트농도는 우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옥시단트는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이 헷빛에 작용을 받아 반응 생성되는 물질로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리면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오염원은 무엇인가. 환경청에서 조사한 서울지역의 오염원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탄화수소는 자동차에서 78%, 질소산화물은 76%를 자동차가 배출하고 있다.

차종별 대기오염 기여율을 보면, 탄화수소의 경우, 승용

차가 운수에 대하여는 76%, 전체오염원에 대하여는 59%, 질소산화물은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승용차의 경우 37%, 전체오염원에 대하여는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는 매4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 65년

자동차에 의한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서울)

(단위 : 천톤 / 년)

| | HC | NOx |
|------------|------------|-------------|
| 산업, 발전, 난방 | 9.0(22%) | 30.8(24%) |
| 운 수 | 31.2(78%) | 97.6(76%) |
| 계 | 40.2(100%) | 128.4(100%) |

차종별 대기오염 기여율

|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
| 승용차 | 76%(59%) | 37%(28%) |
| 화물, 버스 | 24%(19%) | 63%(48%) |
| 계 | 100% | 100% |

() : 전체 오염원에 대한 비율

4만대, 75년도 19만대, 85년도 101만대이던 것이 87년 3월 말 현재 135만대에 이르고 있다.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의 비율이 급

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 63년 | 75년 | 83년 | 87년 |
|----------|-----|-----|-----|-----|
| 승용차비율(%) | 31% | 43% | 49% | 51% |

자동차는 인구밀집지역인 대도시에서 주로 운행(전체 자동차의 55%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행)되어 타 배출원 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건물로 둘러 싸인 도로에서 주로 발산되어 오염물질이 도심에서만 맴돌고 있어 낮은 위치에서 배출되므로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 그만큼 타 공해배출원 보다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88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을 대폭강화하여 87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 현 행 | 개 정 |
|-------------|-----|------|
| 일산화탄소(g/km) | 18 | 2.11 |
| 탄화수소(g/km) | 2.8 | 0.25 |
| 질소산화물(g/km) | 2.5 | 0.62 |

이러한 농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에 배기ガス 정화기(삼원촉매전환장치)를 부착하

여야 하며, 배기ガ스 정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有鉛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휘발유속에 함유되어 있는 납(Pb)이 삼원촉매전환장치의 촉매에 피막현상을 일으켜 그 기능을 못쓰게 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위하여는 삼원촉매전환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환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연휘발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III. 추진경위

관제부처협의를 거쳐 85년 10월 28일 보건사회부령(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농도기준으로 87. 7.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력자원부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86. 11. 7)하여 무연휘발유의 규격을 제정하고 정유사에 본격

무연휘발유 품질 기준

|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무연휘발유 |
|------------|---------|---------|-----------|
| • 옥탄가(RON) | 95 이상 | 88 이상 | 91 이상 |
| • 납(g/l) | *0.3 이하 | *0.3 이하 | 0.013 이하 |
| • 인(g/l) | - | - | 0.0013 이하 |
| • 색상 | 착색 | 착색 | 노란색 |

(주) *의 납 함량 단위는 mg/l 임.

정유사 무연휘발유 생산공급시설설치 및 투자계획

◎ 정유사별 개질시설(Reformer) 능력

| | 油公 | 湖油 | 京仁 | 雙龍 | 極東 | 計 |
|------------|-----|------|-----|-----|-----|------|
| 시설능력(천B/D) | 7.3 | 17.0 | 3.6 | 3.6 | 3.0 | 34.5 |

〈주〉 극동은 88.6 말 완공 예정

◎ 정유사별 무연휘발유 생산계획

| | 생 산 방 법 | |
|----|---|---|
| | 단 기 | 장 기 |
| 油公 | • 기존휘발유 제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질유 혼합비율 상향조정으로 생산공급 | • 신규생산설비 투자여부는 무연휘발유 수요증가 추이에 따라 검토 |
| 湖油 | " | • MTBE가격변동에 따라 생산공급 방안 재검토 |
| 京仁 | • 나프타개질공정 개조 및 촉매고체로 생산공급 | • 나프타개질시설 개조 후 무연휘발유 수요증가 추이에 따라 LSR이성화시설 건설 검토 |
| 雙龍 | • 油公과 동일 | • 무연휘발유 수요증가 추이에 따라 개질유 제조공정 증설 검토 |
| 極東 | • 신규 Catalyst Reforming Unit 건설 완공후 생산공급 | |

● 정유사별 무연휘발유 공급시설 설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 油 公 | 湖 油 | 京 仁 | 雙 龍 | 極 東 | 計 |
|------|-------|-------|-------|-----|-------|---------|
| 제조시설 | - | - | 2,290 | - | 5,380 | 7,670 |
| 저장시설 | 312.3 | 514 | 1,500 | 714 | 720 | 3,760.3 |
| 출하시설 | 621.7 | 516 | 300 | 254 | 1,140 | 2,831.7 |
| 계 | 934 | 1,030 | 4,090 | 968 | 7,240 | 14,262 |

적으로 생산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유사의 무연휘발유 생산은 모두 개질나프타의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우선대처하고, 수요신장에 따라 MTBE등의 첨가제를 혼합할 것인지 개질장치를 증설하여 공급할 것인지는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회사도 그동안 새로운 배출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생산준비하여 87. 7. 1부터 포니엑셀, 프레스토, 르망, 프라이드, 그렌저는 삼원촉매전환장치를 부착 출고하고 나머지 차종은 88. 1. 1부터 저공해차량으로 출고키로 하였다.

IV. 無鉛휘발유 공급의 문제점 및 대책

첫째의 문제점은 공급체제를 갖추느냐에 따라 공해방지 대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다.

전국 2,492개 주유소에서 無鉛휘발유를 팔게 하려면 無鉛휘발유의 수요가 많거나 판매마진이 커야 할 것이다. 물론 장사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량의 수요에도 무연휘발유를 판매할 주유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수요가 많을 때 판매하겠다는 의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2,492개 주유소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불이행시 이를 처리할 행정력이 못미치고 또한 경제흐름에도 싫다는 물건을 적자를 내면서 판매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無鉛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이다.

연도별 무연휘발유 수요 추정

(단위 : 천 배럴)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보통휘발유 | 10,128 | 10,598 | 10,396 | 9,799 | 9,186 |
| 무연휘발유 | 420 | 1,744 | 3,798 | 6,098 | 8,618 |
| 계 | 10,548 | 12,342 | 14,194 | 15,897 | 17,804 |
| 무연휘발유 점유율 | 4.0 | 14.1 | 26.8 | 38.4 | 48.4 |

無鉛휘발유 제조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 정도 비싸며, 이를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할 경우, 또한 자동차도 삼원촉매전환장치부착으로 대당 50~60만원

주유시설 설치방안별 비용

| 신 규 설 치 | | 기 존 시 설 전 용 | |
|-----------------|---|-----------------|-----------------|
| 필 요 사 항 | 비 고 | 필 요 사 항 | 비 고 |
| - 저장탱크설치 | - 향후전면 무연화시시설 영여발생 | - 저장탱크 및 주유기 세척 | - 추가소요 비용 저렴 |
| - 주유기 설치 | - 추가소요비용 과다 | - 주유기 일부 부품교체 | - 공사기간 단축(약 3일) |
| - 주유설비 설치 부지 확보 | - 시설 설치기간 약 20일 소요 - 시설설치기간중 정상영업 지장 - 부지추가 확보 필요 (4 ~ 5평) | | - 부지추가확보 불필요 |
| - 소요비용(천원) | 10,000 | 소요비용(천원) | 500 |

비싸지는 데 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할 경우 환경오염방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만이 부담하게 되어 그것도 7월 1일 이후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고의던 실수던 간에 無鉛휘발유용 자동차에 유연휘발유를 사용하여 저공해 차량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겪은 현행 보통휘발유가격과 같게 하고 판매마진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다행이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잘되어 무연휘발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15% 경감하여 현행 100%를 85%로 하였다.

특별소비세 15% 경감분의 일부는 정유사 제조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분은 대리점 및 주유소판매마진으로 사용하고 소비자 가격은 1당 570원으로 결정하였다.

현재 시도지사 정유사로부터 각 주유소의 無鉛휘발유 판매예상업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주유소의 67% 이상이 87. 7. 1부터 無鉛휘발유를 판매할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수는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유소 현황 및 무연휘발유 판매업소수

| 시 · 도 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주 유 소 수 | 252 | 179 | 116 | 63 | 39 | 358 | 161 | 127 | 272 | 175 | 166 | 263 | 293 | 28 | 2,492 |
| 무연휘발유판매업소수 | 251 | 155 | 98 | 52 | 30 | 246 | 68 | 78 | 170 | 126 | 90 | 134 | 174 | 8 | 1,680 |

주유소에서 無鉛휘발유용 차량에 有鉛휘발유를 실수로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주유입구와 주유기의 주유전의 크기를 기존보다 작게 하여 기존주유기의 주유전이 無鉛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물리적으로 주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에 無鉛휘발유 사용차량이라는 표지를 주유구 입구에 부착하고 無鉛휘발유 주유기는 노란색으로 구분 표시도록 하였다.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無鉛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無鉛휘발유 취급주유소는 폴 사이인 밑에 無鉛휘발유 취급표시를 하여 소비자는 멀리서도 無鉛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르더라도 후손을 위한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사들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차질없이 생산 준비를 끝내고 유통단계에서도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참고로 유럽국가의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무연휘발유 보급정책을 기술한다.

I. 유럽국가의 무연휘발유 보급정책 (정부 조세정책 측면)

89년 이후 연차적으로 전 EEC권내의 無鉛휘발유 전면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無鉛휘발유 사용지침이 85. 5월 EEC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EEC 각국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무연휘발유 보급 확대시책을 발표해 왔음.

無鉛휘발유 공급율 제고를 위해 유럽 각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Tax Incentive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일 먼저 서독이 85. 4월 有鉛과 無鉛휘발유의 소비세율을 차등부과 한 이후 현재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 제국들은 無鉛휘발유 보급확대를 위한 조세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V. 맷는말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겨우 2,000달러가 넘는 우리나라가 10,000달러가 되는 국가에서나 실시하는 무연휘발유를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2년전 업계와 협의를 거쳐 8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예고하고, 이에 따라 각 업체(정유사 및 자동차회사)에서 그동안 준비를 하여왔고, 확실히 예전되는 공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 대책은 다소 비용이 들고 불편이

1. 西 獨

○無鉛휘발유 보급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휘발유 소비세 조정) 시행

- 85. 4 월과 86. 1 월의 2 차례에 걸쳐 조정.

○세제지원 대책

- 소비세율 변경내용

|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차 이 |
|-----------------------|-----------------------|-----------------------|-----------|
| 소비세율 86. 1 - 86. 3 | 2.52 - 2.265 DKR/ℓ | 2.52 - 2.265 DKR/ℓ | 0 |
| 86. 4 - | 2.265DKR/ℓ | 2.765DKR/ℓ | 0.50DKR/ℓ |

주) DKR : Danish Kroner

4. 스위스

○85. 10. 1 일 부로 無鉛휘발유 소비세는 인하하고, 有鉛휘발유 소비세는 인상. 또한 수입휘발유의 경우 無鉛휘발유 수입세는 인하하고, 有鉛휘발유의 수입세는 인상

○無鉛휘발유 세제지원책

- 휘발유 소비세율 변경내용

|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차 이 |
|--|----------------------------------|----------------------------------|---------------------------|
| 납합량(Max.) | 0.013g/ℓ | 0.15g/ℓ | |
| 소비세 81. 4 - 85. 3 85. 4 - 85. 12 86. 1 - 현재 | 0.51DM/ℓ 0.49DM/ℓ 0.46DM/ℓ | 0.51DM/ℓ 0.53DM/ℓ 0.53DM/ℓ | 0 0.04DM/ℓ 0.07DM/ℓ |
| | | | |

2. 네덜란드

○휘발유 소비세율 구조변경 조치시행(86. 4. 1 일부부 및 無鉛휘발유 사용차량에 대한 도로세 감면조치 시행

○無鉛휘발유 세제지원책

- 휘발유 소비세 구조변경

|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차 이 |
|----------------------------------|---------------------------|--|------------------------|
| 납합량(Max.) | 0.013g/ℓ | 0.15g/ℓ | |
| 소비세 85. 12 - 86. 3 86. 4 - | 0.7234DFL/ℓ 0.687DFL/ℓ | 0.7234DFL/ℓ 0.801 DFL/ℓ 0.7325 DFL/ℓ | 0 0.114-0.0 45DFL/ℓ |
| | | | |

- 휘발유 수입세 조정(85. 7 월 : 당초계획)

- 無鉛휘발유 수입세 : 0.08SF/ℓ 인하
- 有鉛휘발유 수입세 : 0.02SF/ℓ 인상

5. 스웨덴

○86년초 無鉛휘발유 전국공급 개시와 동시에 無鉛휘발유 특별세(Special Taxes) 인하

○특별세 인하내용

|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차 이 |
|--------------------------|-------------------------|--------------------------|----------------|
| 납합량(Max.) | 0.013g/ℓ | 0.15g/ℓ | |
| 특별세 85. 12 86. 1 - | 2.334SKR/ℓ 2.19SKR/ℓ | 2.334SKR/ℓ 2.334SKR/ℓ | 0 0.14SKR/ℓ |
| | | | |

주) SKR : Sweden Krone

6. 노르웨이

○86. 1 월부터 無鉛과 有鉛휘발유의 소비세 차등부과

○소비세 인하내용 : 미확인

| |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유 | 차 이 |
|-----------|----------|----------------|-----|
| 납합량(Max.) | 0.013g/ℓ | 0.54 - 0.63g/ℓ | |

II. 주요국의 휘발유에 부과하는 제세금

1. 美 國

美國은 주요 석유회사 및 정유회사들이 각 회사별 판매가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동일 회사일지라 하더라도 운송비 등이 감안되어 지역별로 판매하는 가격이 각기 상이하며 또한 각주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각기 상이한 관계로 최종소비자 가격은 각 주별로 각기 상이한 실정임.

가. 美國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종류

○無鉛 고급휘발유

○有鉛 보통휘발유

○無鉛 보통휘발유

나. 판매경로 및 가격구조

*有鉛 고급휘발유는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有鉛 보통휘발유도 극히 제한된 몇몇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조만간 有鉛휘발유 판매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

○판매경로

*석유 및 정유회사

- 자사 판매망을 통하여 소비자에 직판(Texaco 사가 Texaco 주유소를 통하여 소비자에 판매)

*Through Co. Operated Retail Outlets

- 기타 소비자(공장, 농업용 등)에 직판

- 도매상-소매상

○가격구조

美國의 종류별 휘발유 가격

(단위 : \$/갤론)

| 휘발유 종류별 | 세금전 공장도 가격 | 제세금 | 소비자가격 | 비고 |
|-----------------|----------------|-------------------|-----------------|-------------|
| 고급휘발유 -無鉛휘발유 | φ76.9 φ78.6 | φ20.076 φ17.00 | φ96.97 φ95.6 | 뉴욕주 뉴저지주 |
| 보통휘발유 -有鉛 | φ58.9 φ57.1 | φ20.076 φ17.00 | φ78.97 φ74.1 | 뉴욕주 뉴저지주 |
| -無鉛 | φ63.2 φ59.5 | φ20.076 φ17.00 | φ83.2 φ76.5 | 뉴욕주 뉴저지주 |

2. 프랑스

기준 : 1. 86. 7. 15, 2. 100리터당F.F

| 종류 | 세전공장도가격 | 제세금 | 소비자가격 | 세금종류 |
|--------------------|---------|-------|-------|---|
| 고급휘발유 (有鉛·無鉛동일) | 129.34 | 73.3% | 485 | 내국세 267.40FF 에너지세 0.14FF 석유기금세 1FF 특수사업기금세 9.71FF 석유공업연구세 1.35FF 부가가치세 18.6% |
| 보통휘발유 | 132.81 | 71.9% | 473 | 내국세 253.81FF 에너지세 0.14FF 석유기금세 1FF 특수사업기금세 9.71FF 석유공업연구세 1.35FF 부가가치세 18.6% |

*주요 석유 및 정유회사(Major Refiners) - 상기 판매경로로 판매

- 기타 중소 석유 및 정유회사(Other Refiners - Gas Plant Operator) - 상기 판매경로로 판매

- 도매상(Resellers) - 상기 판매경로로 판매

다. 석유 관련 세세금

○자동차용 유류(휘발유 및 디젤유)에는 석유세로써 연방세 명목으로 캘론당 9¢가 전국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이에 추가하여 주별로 각기 상이) 가부과됨.

○또한 몇몇 주에서는 연방 및 주 석유세 부과에 추가하여 주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참고사항(예) : 최종 판매가격(無鉛 고급휘발유)

| | 85년 5월 - 뉴욕 | 연방 석유세 ϕ9 | 주석유세 ϕ8 | 판매세 4% (ϕ3.076) | 총계 ϕ96.97 (ϕ97) |
|---------|----------------|-----------------|------------|-----------------------|-----------------------|
| - 뉴저지 | ϕ78.6 | ϕ9 | ϕ8 | - | ϕ95.6 (ϕ5.24) |
| - 캘리포니아 | ϕ87.3 | ϕ9 | ϕ9 | 6% (ϕ5.24) | ϕ110.54 |

3. 濩洲

| 휘발유 종류별 | 세금 전 공장도가격 | 제세금 | 소비자가격 (리터당) | 세금의 종류 |
|----------|---------------|------------|----------------|---------------------------------------|
| 고급휘발유 | | | | 연방세 |
| - 有鉛 | \$ 0.19285 | \$ 0.31715 | \$ 0.51 | Commonwealth Excise Tax \$ 0.20185 |
| - 無鉛 | \$ 0.23285 | " | \$ 0.55 | Crude Oil Excise & Royalty \$ 0.08000 |
| | | | | Total \$ 0.28185 |
| 보통휘발유 | | | | 州稅(NSW주) |
| - 無鉛스탠다드 | \$ 0.19285 | \$ 0.31715 | \$ 0.51 | Business Franchise Fee \$ 0.03530 |
| | | | | Total \$ 0.31715 |

주 1) 상기 세금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며 소비자 가격도 주유소마다 약간씩 상이하므로 동 소비자 가격은 평균 가격임.

주 2) 보통휘발유의 경우 有鉛과 無鉛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無鉛스탠다드로 통일되어 있음.

4. 日本

| 휘발유종류별 | 세금 전 공장도가격 | 제세금 (정액 또는 정율) | 소비자가격(ℓ) | | 비고(세금의 종류) |
|---------------|---------------|------------------------------------|------------|------------|------------------------------------|
| | | | 동경시내중심부 | 동경외곽지대 | |
| 고급휘발유 | | | | | |
| - 有鉛 | 조사곤란 | 53,800/Kℓ (종량세로 정액 적용) (") | 132 - 133円 | 126 - 136円 | 휘발유세 45,600円/Kℓ 지방도로세 8,200円/Kℓ |
| - 無鉛 | " | | 131円 | 125 - 135円 | |
| 보통휘발유 | | | | | |
| - 有鉛 (생산부) | - | 53,800円/Kℓ (정액 적용) (") | - | - | 휘발유세 45,600円/Kℓ 지방도로세 8,200円/Kℓ |
| - 無鉛 | 조사곤란 | | 121円 | 115 - 125円 | |

참고사항

가. 소비자가격 :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주유소에서

자체 결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

나. 제세금 :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액이 적용됨.

다. 휘발유의 종류별 생산 비중

○동 가격은 日本 通産省에서도 정확한 가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업계에서는 자사내에서도 기밀사항이어서 조사가 곤란함.

| 구 분 | 생 산 비 중 | 사 용 차 량 |
|---------------------------------|------------------------|---|
| 고급휘발유(일본에서의 통칭: 하이오크) 유 무 | 연 연 2 - 3% 5% | 구형(1970년대 이전) 차량. 빤쓰, BMW 등 수입차 및 일본산 고급차 |
| 보통휘발유(일본에서의 통칭: 레귤러) 유 무 | 연 연 생 산 무 93% | - 일 반 차 량 |

라. 세금 전 공장도가격:

휘발유가격 대비

| 국별 | 종류별 구분 | 단위 | 세전공장도 | 제세금 | 소비자가격 | 비 고 | | | | | | | |
|----------------|-----------------------------------|-------|---------|------------|-------------|---|-----------|----------|-----------|-----------|--|--|--|
| | | | | | | 86. 5 월 (공장도) | 연방 석유세 | 주 석유세 | 판매세 | 소비자 가격 | | | |
| 美 國 (86. 5) | 무연 고급 | ￠/gal | 76.9 | 20.076 | 96.97* | ○연방석유세 9￠/gal 일률적 부과되며 주석유세(주별로 각기 상이) 부과됨. 또한 몇몇 주에서는 주판매세가 부과되고 있음. | | | | | | | |
| | | | 78.6 | 17.00 | 95.6** | | | | | | | | |
| | | | 63.2 | 20.076 | 83.2* | | | | | | | | |
| | 무연 보통 | | 59.5 | 17.00 | 76.5** | 86. 5 월 연방 석유세 | 주 석유세 | 판매세 | 소비자 가격 | | | | |
| | | | 58.9 | 20.076 | 78.97** | - 뉴욕* | 9 | 8 | 4% | 96.97 | | | |
| | | | 57.1 | 17.00 | 74.1** | - 뉴저지** | 9 | 8 | - | 95.6 | | | |
| 프랑스 (86. 7) | 고급 (유·무연동일) 보통 | | 129.34 | 73.3% | 485 | - 켈리포니아 | 9 | 9 | 6% | 110.54 | | | |
| | | | | | | ○내국세 267.40FF에 너지세 0.14FF 석유기금세 1FF 특수사업기금세 9.71FF 석유공업연구세 1.35FF 부가가치세 18.6% | | | | | | | |
| | | | 132.81 | 71.9% | 473 | | | | | | | | |
| 藻 洲 | 무연 고급 유연 보통 무연 보통 | \$/ℓ | 0.23285 | 0.31715 | 0.51* | ○세금은 각 주마다 약간 상이하며, 소비자 가격도 각 주유소마다 약간 상이(주: 참조) | | | | | | | |
| | | | 0.19285 | 0.31715 | 0.55* | * 소비자 가격은 평균 가격임 | | | | | | | |
| | | | 0.19285 | 0.31715 | 0.51* | ○보통휘발유의 경우 유·무연 구별치 말고 Unleaded Standard로 통일되어 있음 | | | | | | | |
| 日 本 | 무연 고급 유연 고급 무연 보통 | ¥/ℓ | | 53,800¥/kl | 131* | ○휘발유 세 : 45,600¥/kl | | | | | | | |
| | | | | | 125 - 135** | 53,800¥/kl | | | | | | | |
| | | | | 53,800 " | 132 - 233* | ○지방도로세 : 8,200 " | | | | | | | |
| | | | | | 126 - 136** | * 동경시내 중심부 | | | | | | | |
| | | | | 53,800 " | 121* | ** 동경 외곽 지역 | | | | | | | |
| | | | | | 115 - 125** | ○세전공장도가격 자사내 기밀사항 조사 곤란 | | | | | | | |
| 台 湾 (86. 8) | 무연 (고급·보통동일) 유연 고급 유연 보통 | 원/ℓ | 16.2 | 17% | 19 | ○소비자 가격은 주유소에서 자체 결정 지역에 따라 상이 | | | | | | | |
| | | | 16.2 | 17% | 19 | 물품세 : 12%, 영업부가가치세 : 5% | | | | | | | |
| | | | 15.3 | 17% | 18 | (86. 4. 1 일 시행) | | | | | | | |

〈주〉 ○연방세

- 연방소비세 : 0.20185 \$

- 원유소비세 : 0.08000 \$

0.282185 \$

○주세(NSW주)

- Business Franchise Fee : 0.03530 \$

제 : 0.31715 \$